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의자 : 한송연, 이경숙, 전해연,
김현택, 박윤옥, 정현미,
손정자, 박경원, 원주영,
감자훈민

1. 제안 이유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대상에 따른 상이한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과 중복감면 대상을 재정비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나. 라바파크 이용료 감면 기준 개정(안 별표2)

구분	당초	개정
감면율	감면대상 별 10%, 20% 구분	감면율 통일 20%
감면대상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를 둔 가족	두 자녀를 둔 가족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 조례」 제2조, 제3조

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7에 따라 반환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시 설	감면율 (감면액)	대 상	비고
체험 전시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20인(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두 자녀를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감면사유 다수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적용
라바 파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두 자녀를 둔 가족 · 평일 단체 20인(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이상 	〃
사계절 썰매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20인 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두 자녀를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모든 유료시설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체험 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 썰매장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다수의 시설을 이용할 시 최초 1개소 이용 후 다음 시설부터 적용 	각 시설별 감면 사유 적용 후 중복적용 가능

■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7]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입장한 경우	이용예정일까지 반환 신청한 경우	0%
	이용예정일 경과 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별</u> <u>표 7에 따라 반환한다.</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라바파크 이용료 감면 기준(별표2)

구분	당초	개정
감면율	감면대상 별 10%, 20% 구분	감면율 통일 20%
감면대상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를 둔 가족	두 자녀를 둔 가족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추계 : 총 9,821천원 수입 감소

- 세입 산출 내역(1년 기준)

구분		계	어린이	보호자
당초	2024년 기준 (어린이 10% 보호자 감면 미적용)	수입금 (단위: 천원) 64,373	30,886	33,487
개정	개정이후 추계 (시민 및 두자녀가정 20%)	수입금 (단위: 천원) 54,552	28,837	25,715

- 어린이 이용료 추계 산출내역

구 분	(할인 전) 이용료	(할인 후) 이용료	어린이 인원	세외수입 금액
계			3,000명	28,837천원
평일	10,000원	8,000원	1,000명	8,000천원
주말	11,000원	8,800원	2,000명	17,600천원
중복할인		1,000원	위 인원에 포함	3,237천원

- 동반보호자 요금 산출내역

구 분	(할인 전) 이용료	(할인 후) 이용료	동반보호자 인원	세외수입 금액
계			5,000명	25,715천원
전일	6,000원	4,800원	5,000명	24,000천원
중복할인		1,000원	위 인원에 포함	1,715천원

※ 2024년 라바파크 이용 인원: 어린이 3,277명 / 보호자 5,817명

※ 중복할인(1,000원) : 하루에 다수의 시설을 이용할 시 최초 1개소 이용 후 다음 시설부터 적용(각 시설별 감면사유 적용 후 중복적용 가능)

4. 작성자

북지국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 plus)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